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(주)하나은행

2. 제재조치일 : 2026. 7. 2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과태료(6천 3백만원) 부과
임 원	-
직 원 등	주의 : 2명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: 3명 (교육 미이수시 자율처리필요사항 또는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주의 상당))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

(1)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

「은행법」 제34조의2 제1항 제3호 등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,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,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,

(주)하나은행 ○○○ 등은 '20. 11. 18. ~ '23. 9. 21. 중 ○○○ 등 기관 ○개 및 개인 ○○○명에게 재산상 이익 ○○○억원(○○건)을 제공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를 누락(○건)하거나,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았음(○○건)

< 관련법규 >

「은행법」 제34조의2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

「은행법 시행령」 제20조의2(불건전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)

「은행업감독규정」 제29조의3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